

2023. 5. 15.(월) 10:00

제30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4월 27일

2. 제 출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조례 내 용어 정비 및 상위법령 인용 등을 통해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개정절차를 줄이고자 함

4. 주요내용

- 여비 지급방식의 명확화(안 제2조)
- 상위법령 별표 인용 및 별표 1 삭제(안 제4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금액 강화(안 제5조)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6조)

5.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공무원 여비 규정」,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2조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성군의회 공무원의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에 대해 지급방식의 명확화 및 부정수령시 가산금액을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급” 을 “일괄 지급” 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1” 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2배” 를 각각 “5배” 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 를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 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을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일액여비” 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p> <p>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p> <p>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p> <p>1 ~ 3. (생략)</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 ————— ————— 일괄 지급—————.</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p> <p>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 ————— 5배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5배 —————.</p> <p>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4. 규정 제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 8. (생략)

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4. _____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_____.

5. ~ 8. (현행과 같음)

9. _____
_____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_____

_____.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2022.12.27. 일부개정 · 시행]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2023. 3. 2. 일부개정 · 시행]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1일당)
제1호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22. 10. 11. 일부개정·시행)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4월 27일

2. 제 출 자: 최재규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22.12)에서 권고한 사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에 대한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여비 지급에 관해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 신설(안 제4조제4항)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안 제5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형사소송법제69조에 따라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출석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달성군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정활동비는 [별표 1]” 을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별표 1” 로, “달성군” 을 “달성군의회”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별표 2]의” 를 “별표 2에 따른” 으로, “달성군” 을 “달성군의회” 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여행에 대한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④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

1. 공소 제기되고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 : 공소제기 및 구속된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

2.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출석정지 처분 받은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금지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활동비등을 지급받지 않은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 중 “달성군”을 “달성군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생 략)</p> <p>②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u>달성군</u>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③(생 략)</p> <p>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생 략)</p> <p>②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u>달성군</u>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③(생 략)</p> <p>제4조(여비 지급) ①(생 략)</p> <p>② <u>제1항의 공무원여행 중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의장·부의장과 의원의 구분 없이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2] 중 제1호를 준용하여 국내 여비를 지급한다.</u></p> <p>③ 제1항의 공무원여행 중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국외 여비를 지급한다.</p> <p>1. <u>항공운임, 준비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 5]</u></p> <p>2. <u>일비, 숙박비, 식비 : 의장·부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4] 중 4, 의원은 같은 규정의 [별표 4] 중 5</u></p> <p><u><신 설></u></p>	<p>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별표 1-_____ 달성군의회 _____.</u></p> <p>③(현행과 같음)</p> <p>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현행과 같음)</p> <p>② _____ <u>별표 2에 따른</u> _____ <u>달성군의회</u> _____.</p> <p>③(현행과 같음)</p> <p>제4조(여비 지급) ①(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공무원여행에 대한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u></p> <p><u><삭 제></u></p> <p>④ <u>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u></p>

④(생략)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되고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및 구속된 날로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의정활동비(그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한다)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신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⑤(현행과 같음)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

1. 공소 제기되고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 공소제기 및 구속된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
2.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출석정지 처분 받은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금지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활동비등을 지급받지 않은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준용) _____
_____ 달성군의회 _____.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법률)」(2021.12.28. 타법개정, 2022.1.13. 시행)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0.4. 타법개정, 2023.4.5. 시행)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2023.3.2. 일부개정·시행)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여비의 구분 계산) ①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

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제23조(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법률)」 (2022.12.27. 일부개정 · 시행)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3.1.6. 일부개정 · 시행)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4월 27일

2. 제 출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작업단 구성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작업단 구성을 용이하게 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작업단 선정절차를 줄여 효율성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작업단 구성 기준을 5인으로 완화(안 제2조제4호)
- 작업단 선정 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과정 삭제(안 제17조)

5.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작업단 구성 기준 완화 및 선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작업단 구성을 용이하게 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작업단 선정절차를 줄여 작업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7인” 을 “5인”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 를 “군수”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작업단</u>”이라 함은 근로능력이 있는 <u>7인</u>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작업단체를 말한다.</p> <p>5. (생략)</p> <p>제17조(작업단 선정) ① (생략)</p> <p>② <u>작업단 선정은</u> <u>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u> <u>군수가 결정한다.</u></p> <p>③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_____ _____.</p> <p>1 ~ 3. (현행과 같음)</p> <p>4. _____ <u>5인</u> _____ _____.</p> <p>5. (현행과 같음)</p> <p>제17조(작업단 선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u>군수</u> _____ _____.</p> <p>③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23조(노인사회참여의 지원), 제26조(경로우대), 제47조(비용의 보조) 규정에 의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및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어르신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어르신우대업소”(이하 “우대업소”라 한다)라 함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로우대 실천의지가 있는 달성군 소재 업소로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를 말한다.
4. “작업단”이라 함은 근로능력이 있는 5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작업단체를 말한다.
5. “공동작업장”이라 함은 자치단체, 법인 또는 민간인이 설치한 작업장과 경로당 등, “작업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공간을 말한다.

제2장 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지원) 군수는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 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신축사업 및 매입비용
2. 경로당 개·보수 사업
3.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4. 육체적, 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구 구입
5.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지원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호의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어르신 우대 업소 지원

제6조(우대업소지원) 군수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우대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우대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한다.

1. 이·미용업소
2. 목욕업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우대 업소

제8조(요금할인) 우대업소 대표자는 업소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할인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우대업소에 대하여 월별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사업신청·선정) ① 우대업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적정수의 우대업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우대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매년 읍·면장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기준) 읍·면장은 우대업소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로우대 실천의지가 있는 모범 업소
2. 경로우대요금 및 협약사항 이행 가능 업소
3. 편리한 이용을 위한 지역성의 고려

제12조(선정취소) 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업소에 대하여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 미이행 업소
2. 협약 미이행 업소
3. 기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4장 어르신일자리사업 지원

제13조(사업내용) “어르신일자리사업” (이하 “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동작업장 운영을 통한 사업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어르신일자리사업지원) 군수는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업 참여 작업단의 구성 및 교육 지원
2. 신규일감 확보 및 제공 지원
3. 각종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4.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13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자 보조금
2. 작업장 설치 및 개·보수 비용
3. 작업장 운영비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비용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월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매년 군수가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단을 구성하여[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작업단 선정) ① 군수는 작업단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의 확보
2. 참여 어르신의 근로 능력
3. 지속적 사업을 위한 일감의 확보

② 작업단 선정은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사업개시 7일 전까지 작업단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단에 대하여는 참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작업단
2. 불법·부당하게 작업단을 운영시
3. 기타 군수가 작업단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노인 당사자 단체(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자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위탁이 취소 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타 노인 당사자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을 위탁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21조(준용규정) 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노인복지법(법률)」 (2021.12.21. 일부 개정, 2022.3.22. 시행)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4월 27일

2. 제 출 자: 박영동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달성군 내 도시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내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자연친화적 여가생활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식함양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
- 군수와 도시농업인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의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 우수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5. 관계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업 위원회 설치,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도시농업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정서 순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들의 여가 선용과 정서 순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따른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법 제2조제3호를 따른다.
3.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토지 및 공간 등을 활용한 텃밭으로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한 친환경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등을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군수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상자텃밭 보급 등) ①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 ① 군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2.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 및 보급사업
3. 도시농업 관련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4.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8조(교육) 군수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추진) 군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17.3.21. 일부개정, 2017.9.22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 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5월 10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항목이 다양하지 않아, 적용하여야 할 품목 및 규격에 혼선을 야기하므로 품목 및 규격 항목의 추가를 통한 수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67품목 120규격 추가 및 수수료 조정(안 별표 1)
 - 가전 : 안마의자 등 22품목 30규격 추가
 - 가구 : 대리석 식탁 등 5품목 24규격 추가
 - 기타 : 간판 등 40품목 66규격 추가

5.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에 적용되던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현재의 다양한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시 기타 또는 유사품목으로 적용하던 것을 품목 및 규격 항목의 추가를 통한 수수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관련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제2조 및 제18조 관련)

1. 가전제품(*폐가전 무상수거 가능제품 ☎1599-0903)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원)
1	*T.V	42인치이상	6,000
		42인치미만	3,000
2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5,000
		높이 1m미만	3,000
3	가습기	모든 규격	1,000
4	*공기청정기	높이1m 이상	3,000
		높이1m 미만	2,000
5	난로	석유난로	3,000
6	*냉장고	업소용	20,000
		700ℓ 이상	15,000
		500ℓ 이상 700ℓ 미만	9,000
		300ℓ 이상 500ℓ 미만	7,000
		300ℓ 미만	5,000
7	노래방기기	모든 규격	4,000
8	다리미	모든 규격	1,000
9	드라이기	모든 규격	1,000
10	*러닝머신	모든 규격	10,000
11	믹서, 원액기	모든 규격	2,000
12	*복사기	가정용 외	10,000
		가정용	3,000
13	비데	모든 규격	1,000
14	빔프로젝트	모든 규격	2,000
15	선풍기	업소용	2,000
		가정용	1,000
16	세단기	모든 규격	5,000
17	*세탁기	8kg이상	6,000
		8kg미만	5,000
18	스피커	모든 규격	2,000
19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3,000
20	*식기세척기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3,000
21	안마의자	모든 규격	15,000
22	앰프	모든 규격	2,000
23	*에어컨	264㎡(80평)이상	8,000
		66㎡(20평)이상 264㎡(80평)미만	6,000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원)
		66㎡(20평)미만	3,000
		실외기(모든 규격)	3,000
24	연수기	모든 규격	3,000
25	오락기	업소용(높이 1m미만)	3,000
26	음료수냉장고	1,000ℓ 이하만 수거	10,000
27	음식물처리기	모든 규격	2,000
28	의류관리기(스타일러)	모든 규격	6,000
29	*자동판매기	높이1m이상	12,000
		높이1m미만	4,000
30	전기그릴	모든 규격	2,000
31	전기밥솥	모든 규격	2,000
32	전기포트, 감자튀김	모든 규격	1,000
33	전기히터	모든 규격	2,000
34	*전자(가스)렌지	모든 규격	2,000
35	*전축	대형70cm×65cm이상, (케이스 포함)	10,000
		소형70cm×65cm미만, (케이스 포함)	7,000
36	*정수기	스탠드형	4,000
		탁상형	3,000
37	청소기	업소용	2,000
		가정용	1,000
38	커피머신	모든 규격	3,000
39	컴퓨터	모니터, 본체, 노트북 각각	2,000
40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41	팩스기기	모든 규격	2,000
42	흡시어터	모든 규격	2,000
43	기타소형가전	모든 제품	1,000

2. 가구류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원)	
1	문갑	원목	폭 120cm이상	3,000
		원목	폭 120cm미만	2,000
		대리석	폭 120cm이상	8,000
		대리석	폭 120cm미만	6,000
2	비키니장	모든 규격	3,000	
3	상(판)	모든 규격	2,000	
4	서랍장	6단 이상	8,000	
		5단	7,000	
		4단	5,000	
		3단 이하	3,000	
5	소파	1인용	3,000	
		1인 추가시	1,000	
		카우치	6,000	
		스툴	3,000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원)	
		돌쇼파	20,000	
6	식탁(의자별도)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3,000	
		대리석 6인용 이상(받침포함)	15,000	
		대리석 6인용 미만(받침포함)	10,000	
7	신발장	90cm×150cm이상	6,000	
		90cm×150cm미만	3,000	
8	싱크대	120cm×50cm이상 1쪽	7,000	
		120cm×50cm미만 1쪽	5,000	
9	싱크대(대리석상판만)	길이 1.2m 이상 1쪽	12,000	
		길이 1.2m 미만 1쪽	10,000	
10	아일랜드식탁(의자별도)	높이 또는 폭 2미터 이상	8,000	
		높이 또는 폭 2미터 미만	6,000	
11	욕실장	모든 규격	2,000	
12	의자	교회/로비	5인용 이상	
		일반의자	모든 규격	
		좌식의자	모든 규격	
13	장롱	폭 120cm 이상 1쪽	15,000	
		폭 90cm 이상 120cm 미만 1쪽	12,000	
		폭 90cm 미만 1쪽	10,000	
14	장식장	폭 120cm 이상	13,000	
		폭 90cm ~ 120cm 미만	9,000	
		폭 90cm 미만	3,000	
15	차탁자(티 테이블)	원목	3,000	
		대리석	6,000	
16	책상(유리별도)	양쪽 서랍	6,000	
		한쪽 서랍	5,000	
		컴퓨터용(서랍없음)	4,000	
		책상세트(h형 책상-서랍,상판,책장)	10,000	
17	책장(책꽂이)	120cm×180cm이상	10,000	
		50cm×90cm초과 120cm×180cm미만	6,000	
		50cm×90cm이하	3,000	
18	침대	구조물	2인용(더블) 이상 구조물	6,000
			1인용(싱글)구조물	5,000
			유아용	3,000
			어린이 2층	19,000
			접이식	5,000
		매트리스	2인용(더블) 이상 매트리스	7,000
			1인용(싱글)매트리스	5,000
			라텍스 매트리스	6,000
		돌침대	2인용(더블) 이상	20,000
1인용	15,000			
19	협탁	모든 규격	3,000	
20	화장대	거울 부착	6,000	
		거울 미부착	3,000	

3. 그 밖의 생활용품(*폐가전 무상수거 가능제품 ☎1599-0903)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원)
1	가방류	책가방, 핸드백	1,000
		기내용(20인치이하)	2,000
		화물용(20인치초과)	3,000
		골프가방	4,000
2	간판	40cm×90cm이상	7,000
		40cm×90cm미만	4,000
		입간판	3,000
3	거울·액자	70cm×100cm이상	3,000
		40cm×80cm이상 70cm×100cm미만	2,000
		40cm×80cm미만	1,000
4	고무대야	지름100cm이상	5,000
		지름50cm이상 지름100cm미만	3,000
		지름30cm미만	2,000
5	골프채	모든 규격 (3개 1묶음)	1,000
6	금고	대형(70cm × 100cm 이상)	15,000
		중형(50cm× 60cm 이상 70cm×100cm 미만)	12,000
		소형(50cm×60cm 미만)	10,000
7	대자리	3.3㎡당	2,000
8	마대	20kg 당	3,000
9	목발	모든 규격	2,000
10	목재	kg당	1,000
11	문짝, 창문	1㎡당	2,000
12	물탱크(F.R.P)	1㎡이상	10,000
		1㎡미만	5,000
13	벽시계	대형(높이1.5m이상)	3,000
		중형(높이0.5m이상 높이1.5m미만)	2,000
		소형(높이0.5m미만)	1,000
14	변기	좌변기	5,000
		소변기	3,000
		유아용	2,000
15	병풍	모든 규격	2,000
16	보일러	높이 100cm 이상	5,000
		높이 100cm 미만	3,000
17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18	볼링공	모든 규격	2,000
19	블라인드	1㎡당	1,000
20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
21	샌드위치판넬	2㎡당	4,000
22	세면대	개당	3,000
23	소화기	6.5kg 초과	18,000
		6.5kg 이하	5,000
		3.3kg 이하	3,000
24	수족관	1㎡이상 1㎡당	9,000
		0.5㎡이상 1㎡미만	6,000
		0.5㎡미만	5,000
25	스키, 보드, 부츠	모든 규격	3,000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원)
26	스텝퍼	모든 규격	4,000
27	쌀통	모든 규격	2,000
28	쓰레기통	가정용	1,000
		사무실, 옥외용	2,000
29	아이스박스	모든 규격	2,000
30	애완동물집	모든 규격	3,000
31	옷걸이(행거)	모든 규격	2,000
32	욕조	성인용	5,000
		유아용	4,000
		반신욕기	4,000
		족욕기	3,000
33	유리	1m ² 당	2,000
34	유모차	2인용	3,000
		1인용	2,000
35	유아용 놀이매트	3.3m ² 당	2,000
36	유아용 미끄럼틀, 그네	가장 긴 면 1.5m 이상	3,000
		가장 긴 면 1.5m 미만	2,000
37	유아용 자동차, 목마	가장 긴 면 1m 이상	3,000
		가장 긴 면 1m 미만	2,000
38	음식물쓰레기통	120ℓ 이상	3,000
		120ℓ 미만	1,000
39	이동식화장실	모든 규격	30,000
40	이불	솜이불(장당)	2,000
		일반이불(장당)	1,000
		발매트	1,000
41	자전거	성인용	3,000
		어린이용	2,000
42	장난감(인형등)	5kg 당	1,000
43	장판, 비닐, 천막	3.3m ² 당	2,000
44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45	전기담요	전기장판	2,000
		옥,온수매트(2인용 이상)	6,000
		옥,온수매트(1인용)	3,000
46	조명기구	모든 규격	2,000
47	칠판(게시판)	1m 이상	3,000
		1m 미만	2,000
48	카시트	모든 규격	3,000
49	카펫	3.3m ² 당	5,000
50	캐비닛	90cm×150cm 이상	5,000
		90cm×150cm 미만	3,000
51	키보드	성인용	2,000
		어린이용	1,000
		전동식	5,000
52	타이어	지름110cm이상	12,000
		지름60cm이상 ~ 지름110cm미만	5,000
		지름60cm미만	3,000
53	탁구대, 당구대	모든 규격	15,000
54	*태양광 패널	20kg 기준	7,000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원)
55	텐트	4인용 이상	4,000
		4인용 미만	3,000
56	트램펄린	개당	5,000
57	트리	높이 100cm 이상	5,000
		높이 100cm 미만	3,000
58	파렛트	모든 규격	4,000
59	파티션	폭 100cm 이상	4,000
		폭 100cm 미만	3,000
60	피아노	그랜드	18,000
		업라이트	13,000
		디지털	5,000
61	항아리	대형 1개당 1m ³ 이상	5,000
		중형 1개당 0.5m ³ 이상 1m ³ 미만	2,000
		소형 1개당 0.5m ³ 미만	1,000
62	헬스자전거	모든 규격	7,000
63	화분	대형(높이 0.5m 이상)	2,000
		소형(높이 0.5m 미만)	1,000
64	화환	모든 규격	3,000
65	휠체어	모든 규격	3,000

□ 상기외의 대형폐기물은 중량, 재질 및 크기를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제2조 및 제18조 관련)</p> <p>○ 가전제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품 명</th> <th>규 격</th> <th>수수료(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냉장고</td> <td>500ℓ 이상</td> <td>9,000</td> </tr> <tr> <td>300ℓ 이상 500ℓ 미만</td> <td>7,000</td> </tr> <tr> <td>300ℓ 미만</td> <td>5,000</td> </tr> <tr> <td rowspan="2">세탁기</td> <td>8kg 이상</td> <td>6,000</td> </tr> <tr> <td>8kg 미만</td> <td>5,000</td> </tr> <tr> <td>탈수기</td> <td>모든 규격</td> <td>2,000</td> </tr> <tr> <td rowspan="2">청소기</td> <td>업소용</td> <td>2,000</td> </tr> <tr> <td>가정용</td> <td>1,000</td> </tr> <tr> <td>가습기</td> <td>모든 규격</td> <td>1,000</td> </tr> <tr> <td>다리미</td> <td>모든 규격</td> <td>1,000</td> </tr> <tr> <td>팩스기기</td> <td>모든 규격</td> <td>2,000</td> </tr> <tr> <td rowspan="3">에어컨디셔너</td> <td>264㎡형(80평)이상</td> <td>8,000</td> </tr> <tr> <td>66㎡형(30평)이상</td> <td>6,000</td> </tr> <tr> <td>66㎡형(30평)미만</td> <td>3,000</td> </tr> <tr> <td rowspan="2">T.V</td> <td>42인치 이상</td> <td>6,000</td> </tr> <tr> <td>42인치 미만</td> <td>3,000</td> </tr> <tr> <td rowspan="2">전축</td> <td>대형70cm×65cm이상, 케이스 포함</td> <td>10,000</td> </tr> <tr> <td>소형70cm×65cm미만, 케이스 포함</td> <td>7,000</td> </tr> <tr> <td>스피커</td> <td>모든 규격</td> <td>2,000</td> </tr> <tr> <td>컴퓨터</td> <td>모니터, 본체, 노트북</td> <td>2,000</td> </tr> <tr> <td>복사기</td> <td>높이 1m이상</td> <td>7,000</td> </tr> <tr> <td>가스오븐렌지</td> <td>높이 1m이상</td> <td>5,000</td> </tr> <tr> <td>전자(가스)렌지</td> <td>모든 규격</td> <td>2,000</td> </tr> <tr> <td rowspan="2">선풍기</td> <td>업소용</td> <td>2,000</td> </tr> <tr> <td>가정용</td> <td>1,000</td> </tr> <tr> <td>공기청정기</td> <td>높이 1m이상</td> <td>3,000</td> </tr> <tr> <td>식기세척기</td> <td>모든 규격</td> <td>3,000</td> </tr> <tr> <td rowspan="2">난로</td> <td>석유난로</td> <td>3,000</td> </tr> <tr> <td>전기난로</td> <td>2,000</td> </tr> <tr> <td>기타소형가전</td> <td>모든 제품</td> <td>1,000</td> </tr> <tr> <td>오락기</td> <td>업소용(높이 1m미만)</td> <td>3,000</td> </tr> </tbody> </table>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냉장고	500ℓ 이상	9,000	300ℓ 이상 500ℓ 미만	7,000	300ℓ 미만	5,000	세탁기	8kg 이상	6,000	8kg 미만	5,000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청소기	업소용	2,000	가정용	1,000	가습기	모든 규격	1,000	다리미	모든 규격	1,000	팩스기기	모든 규격	2,000	에어컨디셔너	264㎡형(80평)이상	8,000	66㎡형(30평)이상	6,000	66㎡형(30평)미만	3,000	T.V	42인치 이상	6,000	42인치 미만	3,000	전축	대형70cm×65cm이상, 케이스 포함	10,000	소형70cm×65cm미만, 케이스 포함	7,000	스피커	모든 규격	2,000	컴퓨터	모니터, 본체, 노트북	2,000	복사기	높이 1m이상	7,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5,000	전자(가스)렌지	모든 규격	2,000	선풍기	업소용	2,000	가정용	1,000	공기청정기	높이 1m이상	3,000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3,000	난로	석유난로	3,000	전기난로	2,000	기타소형가전	모든 제품	1,000	오락기	업소용(높이 1m미만)	3,000	<p>[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제2조 및 제18조 관련)</p> <p>1. 가전제품(*폐가전 무상수거 가능제품 ☎1599-0903)</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연번</th> <th>품목</th> <th>규격</th> <th>수수료(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td> <td rowspan="2">*T.V</td> <td>42인치이상</td> <td>6,000</td> </tr> <tr> <td>42인치미만</td> <td>3,000</td> </tr> <tr> <td rowspan="2">2</td> <td rowspan="2">*가스오븐렌지</td> <td>높이 1m이상</td> <td>5,000</td> </tr> <tr> <td>높이 1m미만</td> <td>3,000</td> </tr> <tr> <td>3</td> <td>가습기</td> <td>모든 규격</td> <td>1,000</td> </tr> <tr> <td rowspan="2">4</td> <td rowspan="2">*공기청정기</td> <td>높이1m 이상</td> <td>3,000</td> </tr> <tr> <td>높이1m 미만</td> <td>2,000</td> </tr> <tr> <td>5</td> <td>난로</td> <td>석유난로</td> <td>3,000</td> </tr> <tr> <td rowspan="4">6</td> <td rowspan="4">*냉장고</td> <td>업소용</td> <td>20,000</td> </tr> <tr> <td>700ℓ 이상</td> <td>15,000</td> </tr> <tr> <td>500ℓ 이상 700ℓ 미만</td> <td>9,000</td> </tr> <tr> <td>300ℓ 이상 500ℓ 미만</td> <td>7,000</td> </tr> <tr> <td></td> <td></td> <td>300ℓ 미만</td> <td>5,000</td> </tr> <tr> <td>7</td> <td>노래방기기</td> <td>모든 규격</td> <td>4,000</td> </tr> <tr> <td>8</td> <td>다리미</td> <td>모든 규격</td> <td>1,000</td> </tr> <tr> <td>9</td> <td>드라이기</td> <td>모든 규격</td> <td>1,000</td> </tr> <tr> <td>10</td> <td>*러닝머신</td> <td>모든 규격</td> <td>10,000</td> </tr> <tr> <td>11</td> <td>믹서, 원액기</td> <td>모든 규격</td> <td>2,000</td> </tr> <tr> <td rowspan="2">12</td> <td rowspan="2">*복사기</td> <td>가정용 외</td> <td>10,000</td> </tr> <tr> <td>가정용</td> <td>3,000</td> </tr> <tr> <td>13</td> <td>비데</td> <td>모든 규격</td> <td>1,000</td> </tr> <tr> <td>14</td> <td>빔프로젝트</td> <td>모든 규격</td> <td>2,000</td> </tr> <tr> <td rowspan="2">15</td> <td rowspan="2">선풍기</td> <td>업소용</td> <td>2,000</td> </tr> <tr> <td>가정용</td> <td>1,000</td> </tr> <tr> <td>16</td> <td>세단기</td> <td>모든 규격</td> <td>5,000</td> </tr> <tr> <td rowspan="2">17</td> <td rowspan="2">*세탁기</td> <td>8kg이상</td> <td>6,000</td> </tr> <tr> <td>8kg미만</td> <td>5,000</td> </tr> <tr> <td>18</td> <td>스피커</td> <td>모든 규격</td> <td>2,000</td> </tr> <tr> <td>19</td> <td>*식기건조기</td> <td>모든 규격</td> <td>3,000</td> </tr> <tr> <td rowspan="2">20</td> <td rowspan="2">*식기세척기</td> <td>높이1m 이상</td> <td>4,000</td> </tr> <tr> <td>높이1m 미만</td> <td>3,000</td> </tr> <tr> <td>21</td> <td>안마의자</td> <td>모든 규격</td> <td>15,000</td> </tr> <tr> <td>22</td> <td>앰프</td> <td>모든 규격</td> <td>2,000</td> </tr> <tr> <td rowspan="2">23</td> <td rowspan="2">*에어컨</td> <td>264㎡(80평)이상</td> <td>8,000</td> </tr> <tr> <td>66㎡(20평)이상</td> <td>6,000</td> </tr> </tbody> </table>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원)	1	*T.V	42인치이상	6,000	42인치미만	3,000	2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5,000	높이 1m미만	3,000	3	가습기	모든 규격	1,000	4	*공기청정기	높이1m 이상	3,000	높이1m 미만	2,000	5	난로	석유난로	3,000	6	*냉장고	업소용	20,000	700ℓ 이상	15,000	500ℓ 이상 700ℓ 미만	9,000	300ℓ 이상 500ℓ 미만	7,000			300ℓ 미만	5,000	7	노래방기기	모든 규격	4,000	8	다리미	모든 규격	1,000	9	드라이기	모든 규격	1,000	10	*러닝머신	모든 규격	10,000	11	믹서, 원액기	모든 규격	2,000	12	*복사기	가정용 외	10,000	가정용	3,000	13	비데	모든 규격	1,000	14	빔프로젝트	모든 규격	2,000	15	선풍기	업소용	2,000	가정용	1,000	16	세단기	모든 규격	5,000	17	*세탁기	8kg이상	6,000	8kg미만	5,000	18	스피커	모든 규격	2,000	19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3,000	20	*식기세척기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3,000	21	안마의자	모든 규격	15,000	22	앰프	모든 규격	2,000	23	*에어컨	264㎡(80평)이상	8,000	66㎡(20평)이상	6,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냉장고	500ℓ 이상	9,000																																																																																																																																																																																																															
	300ℓ 이상 500ℓ 미만	7,000																																																																																																																																																																																																															
	300ℓ 미만	5,000																																																																																																																																																																																																															
세탁기	8kg 이상	6,000																																																																																																																																																																																																															
	8kg 미만	5,000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청소기	업소용	2,000																																																																																																																																																																																																															
	가정용	1,000																																																																																																																																																																																																															
가습기	모든 규격	1,000																																																																																																																																																																																																															
다리미	모든 규격	1,000																																																																																																																																																																																																															
팩스기기	모든 규격	2,000																																																																																																																																																																																																															
에어컨디셔너	264㎡형(80평)이상	8,000																																																																																																																																																																																																															
	66㎡형(30평)이상	6,000																																																																																																																																																																																																															
	66㎡형(30평)미만	3,000																																																																																																																																																																																																															
T.V	42인치 이상	6,000																																																																																																																																																																																																															
	42인치 미만	3,000																																																																																																																																																																																																															
전축	대형70cm×65cm이상, 케이스 포함	10,000																																																																																																																																																																																																															
	소형70cm×65cm미만, 케이스 포함	7,000																																																																																																																																																																																																															
스피커	모든 규격	2,000																																																																																																																																																																																																															
컴퓨터	모니터, 본체, 노트북	2,000																																																																																																																																																																																																															
복사기	높이 1m이상	7,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5,000																																																																																																																																																																																																															
전자(가스)렌지	모든 규격	2,000																																																																																																																																																																																																															
선풍기	업소용	2,000																																																																																																																																																																																																															
	가정용	1,000																																																																																																																																																																																																															
공기청정기	높이 1m이상	3,000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3,000																																																																																																																																																																																																															
난로	석유난로	3,000																																																																																																																																																																																																															
	전기난로	2,000																																																																																																																																																																																																															
기타소형가전	모든 제품	1,000																																																																																																																																																																																																															
오락기	업소용(높이 1m미만)	3,000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원)																																																																																																																																																																																																														
1	*T.V	42인치이상	6,000																																																																																																																																																																																																														
		42인치미만	3,000																																																																																																																																																																																																														
2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5,000																																																																																																																																																																																																														
		높이 1m미만	3,000																																																																																																																																																																																																														
3	가습기	모든 규격	1,000																																																																																																																																																																																																														
4	*공기청정기	높이1m 이상	3,000																																																																																																																																																																																																														
		높이1m 미만	2,000																																																																																																																																																																																																														
5	난로	석유난로	3,000																																																																																																																																																																																																														
6	*냉장고	업소용	20,000																																																																																																																																																																																																														
		700ℓ 이상	15,000																																																																																																																																																																																																														
		500ℓ 이상 700ℓ 미만	9,000																																																																																																																																																																																																														
		300ℓ 이상 500ℓ 미만	7,000																																																																																																																																																																																																														
		300ℓ 미만	5,000																																																																																																																																																																																																														
7	노래방기기	모든 규격	4,000																																																																																																																																																																																																														
8	다리미	모든 규격	1,000																																																																																																																																																																																																														
9	드라이기	모든 규격	1,000																																																																																																																																																																																																														
10	*러닝머신	모든 규격	10,000																																																																																																																																																																																																														
11	믹서, 원액기	모든 규격	2,000																																																																																																																																																																																																														
12	*복사기	가정용 외	10,000																																																																																																																																																																																																														
		가정용	3,000																																																																																																																																																																																																														
13	비데	모든 규격	1,000																																																																																																																																																																																																														
14	빔프로젝트	모든 규격	2,000																																																																																																																																																																																																														
15	선풍기	업소용	2,000																																																																																																																																																																																																														
		가정용	1,000																																																																																																																																																																																																														
16	세단기	모든 규격	5,000																																																																																																																																																																																																														
17	*세탁기	8kg이상	6,000																																																																																																																																																																																																														
		8kg미만	5,000																																																																																																																																																																																																														
18	스피커	모든 규격	2,000																																																																																																																																																																																																														
19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3,000																																																																																																																																																																																																														
20	*식기세척기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3,000																																																																																																																																																																																																														
21	안마의자	모든 규격	15,000																																																																																																																																																																																																														
22	앰프	모든 규격	2,000																																																																																																																																																																																																														
23	*에어컨	264㎡(80평)이상	8,000																																																																																																																																																																																																														
		66㎡(20평)이상	6,000																																																																																																																																																																																																														

현행		개정안				
			264㎡(80평)미만			
			66㎡(20평)미만	3,000		
			실외기(모든 규격)	3,000		
	24	연수기	모든 규격	3,000		
	25	오락기	업소용(높이 1m미만)	3,000		
	26	음료수냉장고	1,000ℓ 이하만 수거	10,000		
	27	음식물처리기	모든 규격	2,000		
	28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모든 규격	6,000		
	29	*자동판매기	높이1m이상	12,000		
			높이1m미만	4,000		
	30	전기그릴	모든 규격	2,000		
	31	전기밥솥	모든 규격	2,000		
	32	전기포트, 감자튀김	모든 규격	1,000		
	33	전기히터	모든 규격	2,000		
	34	*전자(가스)렌지	모든 규격	2,000		
	35	*전축	대형70cm×65cm이상, (케이스 포함)	10,000		
			소형70cm×65cm미만, (케이스 포함)	7,000		
	36	*정수기	스탠드형	4,000		
			탁상형	3,000		
	37	청소기	업소용	2,000		
			가정용	1,000		
	38	커피머신	모든 규격	3,000		
	39	컴퓨터	모니터, 본체, 노트북 각각	2,000		
	40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41	팩스기기	모든 규격	2,000		
	42	홈시어터	모든 규격	2,000		
	43	기타소형가전	모든 제품	1,000		
	○ 가구류					
		품명	규격	수수료(원)		
		장롱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쇼파	1인용	3,000		
			1인 추가시	1,000		
		식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상(판)	모든 규격	2,000		
		싱크대	120cm×50cm이상 1쪽	7,000		
			120cm×50cm미만 1쪽	5,000		
		책상	양수, 대형	6,000		
			편수, 소형	5,000		
		책장(책꽂이)	120cm×180cm 이상	10,000		
	2. 가구류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원)	
		1	문갑	원목	폭 120cm이상	3,000
	원목			폭 120cm미만	2,000	
	대리석			폭 120cm이상	8,000	
	대리석			폭 120cm미만	6,000	
	2	비키니장	모든 규격	3,000		
	3	상(판)	모든 규격	2,000		
	4	서랍장	6단 이상	8,000		
			5단	7,000		
			4단	5,000		
			3단 이하	3,000		
	5	쇼파	1인용	3,000		

현 행			개 정 안						
	50cm×90cm초과 120cm×180cm미만	6,000			1인 추가시		1,000		
	50cm×90cm이하	3,000			카우치		6,000		
침대	2인용(더블) 구조물	6,000	6	식탁 (의자별도)	스툴		3,000		
	1인용(싱글) 구조물	5,000			들쇼파		20,000		
	2인용(더블) 매트리스	7,000			6인용 이상		5,000		
	1인용(싱글) 매트리스	5,000			6인용 미만		3,000		
					대리석 6인용 이상(받침포함)		15,000		
돌침대	1인용	15,000			대리석 6인용 미만(받침포함)		10,000		
	2인용	20,000							
의자	대형(팔걸이 의자)	2,000	7	신발장	90cm×150cm이상		6,000		
	소형(팔걸이 없는 의자)	1,000			90cm×150cm미만		3,000		
장식장	120cm×180cm이상	13,000	8	싱크대	120cm×50cm이상 1쪽		7,000		
	90cm×180cm이상 120cm×180cm미만	9,000			120cm×50cm미만 1쪽		5,000		
	90cm×180cm미만	3,000	9	싱크대 (대리석상판만)	길이 1.2m 이상 1쪽		12,000		
화장대	거울 부착	6,000			길이 1.2m 미만 1쪽		10,000		
	거울 미부착	3,000	10	아일랜드식탁 (의자별도)	높이 또는 폭 2미터 이상		8,000		
문갑	120cm이상	3,000			높이 또는 폭 2미터 미만		6,000		
	120cm미만	2,000	11	욕실장	모든 규격		2,000		
서랍장	6단	8,000	12	의자	교회/로비		5인용 이상	10,000	
	5단	7,000			일반의자		모든 규격		2,000
	4단	5,000			좌식의자		모든 규격		1,000
	3단 이하	3,000							
신발장	90cm×150cm이상	6,000	13	장롱	폭 120cm 이상 1쪽		15,000		
	90cm×150cm미만	3,000			폭 90cm 이상 120cm 미만 1쪽		12,000		
					폭 90cm 미만 1쪽		10,000		
			14	장식장	폭 120cm 이상		13,000		
					폭 90cm ~ 120cm 미만		9,000		
					폭 90cm 미만		3,000		
			15	차탁자 (티 테이블)	원목		3,000		
					대리석		6,000		
			16	책상 (유리별도)	양쪽 서랍		6,000		
					한쪽 서랍		5,000		
					컴퓨터용(서랍없음)		4,000		
					책상세트(h형책상-서랍,상판,책장)		10,000		
			17	책장(책꽂이)	120cm×180cm이상		10,000		
					50cm×90cm초과 120cm×180cm미만		6,000		
					50cm×90cm이하		3,000		
			18	침대	구조물	2인용(더블) 이상 구조물		6,000	
						1인용(싱글)구조물		5,000	
						유아용		3,000	
						어린이 2층		19,000	
						접이식		5,000	

현 행			개 정 안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원)
				매트리스	2인용(더블) 이상 매트리스	7,000
					1인용(싱글)매트리스	5,000
					라텍스 매트리스	6,000
				돌침대	2인용(더블) 이상	20,000
					1인용	15,000
			19	협탁	모든 규격	3,000
			20	화장대	거울 부착	6,000
						거울 미부착
○ 기타 생활용품			3. 그 밖의 생활용품(*폐가전 무상수거 가능제품 ☎1599-0903)			
품명	규격	수수료(원)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원)
쌀통	모든 규격	2,000	1	가방류	책가방, 핸드백	1,000
벽시계	대형(높이1.5m이상)	3,000			기내용(20인치이하)	2,000
	중형(높이0.5m이상)	2,000			화물용(20인치초과)	3,000
	소형(높이0.5m미만)	1,000			골프가방	4,000
장난감 (인형등)	10kg	2,000	2	간판	40cm×90cm이상	7,000
	5kg	1,000			40cm×90cm미만	4,000
입간판					3,000	
가방류	모든 규격	2,000	3	거울·액자	70cm×100cm이상	3,000
거울·액자	70cm×100cm이상	3,000			40cm×80cm이상	2,000
	40cm×80cm이상	2,000			70cm×100cm미만	1,000
	40cm×80cm미만	1,000			40cm×80cm미만	1,000
캐비닛	90cm×150cm이상	5,000	4	고무대야	지름100cm이상	5,000
	90cm×150cm미만	3,000			지름50cm이상	3,000
지름100cm미만					2,000	
피아노	그랜드	18,000	5	골프채	모든 규격 (3개 1묶음)	1,000
	업라이트	13,000	6	금고	대형(70cm × 100cm 이상)	15,000
	디지털	5,000			중형(50cm× 60cm 이상 70cm×100cm 미만)	12,000
소형(50cm×60cm 미만)					10,000	
문짝, 창문	1㎡ 당	2,000	7	대자리	3.3㎡당	2,000
수족관	1㎡이상 1㎡당	6,000	8	마대	20kg 당	3,000
	0.5㎡이상1㎡미만	9,000	9	목발	모든 규격	2,000
	0.5㎡미만	5,000	10	목재	kg당	1,000
자전거	성인용	3,000	11	문짝, 창문	1㎡당	2,000
	어린이용	2,000	12	물탱크(F.R.P)	1㎡이상	10,000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1㎡미만	5,000
유리	1㎡ 당	2,000	13	벽시계	대형(높이1.5m이상)	3,000
항아리	대형 1개당 1㎡이상	5,000			중형(높이0.5m이상 높이1.5m미만)	2,000
	중형1개당 0.5㎡이상 1㎡미만	2,000			소형(높이0.5m미만)	1,000
세면대	소형1개당 0.5㎡미만	1,000	14	변기	좌변기	5,000
	개 당	3,000			소변기	3,000

현 행			개 정 안			
목재	kg 당	1,000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원)
번기	좌번기	5,000			유아용	2,000
	소번기	3,000	15	병풍	모든 규격	2,000
	유아용	2,000	16	보일러	높이 100cm 이상	5,000
전기담요 등	전기장판	2,000			높이 100cm 미만	3,000
	옥매트(2인용)	6,000	17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옥매트(1인용)	3,000	18	블링공	모든 규격	2,000
이불 등	솜이불(장당)	2,000	19	블라인드	1㎡당	1,000
	일반이불(장당)	1,000	20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
	발매트	1,000	21	샌드위치판넬	2㎡당	4,000
물탱크(F.R.P)	1㎡이상	10,000	22	세면대	개당	3,000
	1㎡미만	5,000	23	소화기	6.5kg 초과	18,000
카펫	3.3㎡ 당	5,000			6.5kg 이하	5,000
애완동물집	모든 종류	3,000			3.3kg 이하	3,000
아이스박스	모든 종류	2,000	24	수족관	1㎡이상 1㎡당	9,000
옷걸이	모든 종류	2,000			0.5㎡이상 1㎡미만	6,000
마대	20Kg 당	3,000			0.5㎡미만	5,000
소화기	20kg 이상	18,000	25	스키, 보드, 부츠	모든 규격	3,000
	6.5kg 이하	5,000	26	스텝퍼	모든 규격	4,000
	3.5kg 이하	3,000	27	쌀통	모든 규격	2,000
			28	쓰레기통	가정용	1,000
					사무실, 옥외용	2,000
			29	아이스박스	모든 규격	2,000
			30	애완동물집	모든 규격	3,000
			31	옷걸이(행거)	모든 규격	2,000
			32	욕조	성인용	5,000
					유아용	4,000
					반신욕기	4,000
					족욕기	3,000
			33	유리	1㎡ 당	2,000
			34	유모차	2인용	3,000
					1인용	2,000
			35	유아용 놀이매트	3.3㎡당	2,000
			36	유아용 미끄럼틀, 그네	가장 긴 면 1.5m 이상	3,000
					가장 긴 면 1.5m 미만	2,000
			37	유아용 자동차, 목마	가장 긴 면 1m 이상	3,000
					가장 긴 면 1m 미만	2,000
			38	음식물쓰레기통	120ℓ 이상	3,000
					120ℓ 미만	1,000
			39	이동식화장실	모든 규격	30,000
			40	이불	솜이불(장당)	2,000
					일반이불(장당)	1,000
					발매트	1,000
			41	차전거	성인용	3,000
					어린이용	2,000

현 행		개 정 안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원)
42	장난감 (인형등)	5kg 당	1,000
43	장판, 비닐, 천막	3.3㎡당	2,000
44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45	전기담요	전기장판	2,000
		욕,온수매트(2인용 이상)	6,000
		욕,온수매트(1인용)	3,000
46	조명기구	모든 규격	2,000
47	칠판(게시판)	1m 이상	3,000
		1m 미만	2,000
48	카시트	모든 규격	3,000
49	카펫	3.3㎡ 당	5,000
50	캐비닛	90cm×150cm 이상	5,000
		90cm×150cm 미만	3,000
51	키보드	성인용	2,000
		어린이용	1,000
		전동식	5,000
52	타이어	지름110cm이상	12,000
		지름60cm이상 ~ 지름110cm미만	5,000
		지름60cm미만	3,000
53	탁구대, 당구대	모든 규격	15,000
54	*태양광 패널	20kg 기준	7,000
55	텐트	4인용 이상	4,000
		4인용 미만	3,000
56	트랩펄린	개당	5,000
57	트리	높이 100cm 이상	5,000
		높이 100cm 미만	3,000
58	파렛트	모든 규격	4,000
59	파티션	폭 100cm이상	4,000
		폭 100cm미만	3,000
60	피아노	그랜드	18,000
		업라이트	13,000
		디지털	5,000
61	항아리	대형1개당 1㎡이상	5,000
		중형1개당 0.5㎡이상 1㎡미만	2,000
		소형1개당 0.5㎡미만	1,000
62	헬스자전거	모든 규격	7,000
63	화분	대형(높이0.5m이상)	2,000
		소형(높이0.5m미만)	1,000
64	화환	모든 규격	3,000
65	휠체어	모든 규격	3,000

현행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상기외의 대형폐기물은 <u>중량 및 크기</u>를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p> <p><input type="checkbox"/> <u>폐기전의 경우 부품이 완전한 경우 무상수거</u>를 원칙으로 하며, <u>부품이 일부 없을 경우 유상수거를 실시함.</u></p>	<p><input type="checkbox"/> ----- <u>중량, 재질 및 크기</u>----- -----.</p> <p><삭제></p>

□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5월 10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는 행정안전부 기관위임사무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행정안전부 재해영향분석과의 권고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6. 검토의견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며,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는 정할 수 없는 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는 폐지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업무에 위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련판례: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대법원, 99추85, 2000. 5. 30.]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現 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퀘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⑩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마.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 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4.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5. 법 제6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폐업 및 재개 신고의 접수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5월 10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한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달성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4. 주요내용

-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 2022. 2. 3.: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결정 신청(조합 → 郡)
 - 2022. 8. 12. ~ 9. 12.: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 2022. 9. 27.: 제299회 달성군의회 의견청취 : 찬성의견 제시
 - 2022. 10. 13.: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郡 → 市)
 - 2022. 11. 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市) : 유보
 - 2023. 2. 5.: 정비계획(안) 보완사항 및 조치 완료
 - 2023. 3. 20. ~ 5. 4.: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 2023. 5.: 달성군 의회 의견청취
 - 2023. 6.(미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郡 → 市)
 - 2023. 7.(미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市)
 - 2023. 8.(미정): 정비구역 지정 고시(市)

○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

-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734-2번지 일원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일부)
- 건축개요: 지하3층/지상25층, 총 4개동
공동주택 389세대

구 분		내 용			
정비구역면적		12,075㎡			
대지면적		11,741㎡			
주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		2,207.31㎡			
연면적	전체	51,369.59㎡	건폐율	23.6%	
	지상층	30,087.05㎡	용적율	256.26%	
	지하층	21,282.54㎡			
공동주택 (세대)	구 분		세대(호)수	비율	
	계		389 (기존 360세대)	100.0	
	전용면적 46.98㎡ (18평)		111	28.53	
	전용면적 59.82㎡ (28평)		75	19.28	
	전용면적 59.94㎡ (35평)		178	45.76	
	전용면적 72.95㎡ (36평)		25	6.43	
주차대수 (대)	구분	법정		계획	
	소계	396		513	
	아파트	389		506(세대당 1.3대)	
	근생시설	7		7	

5.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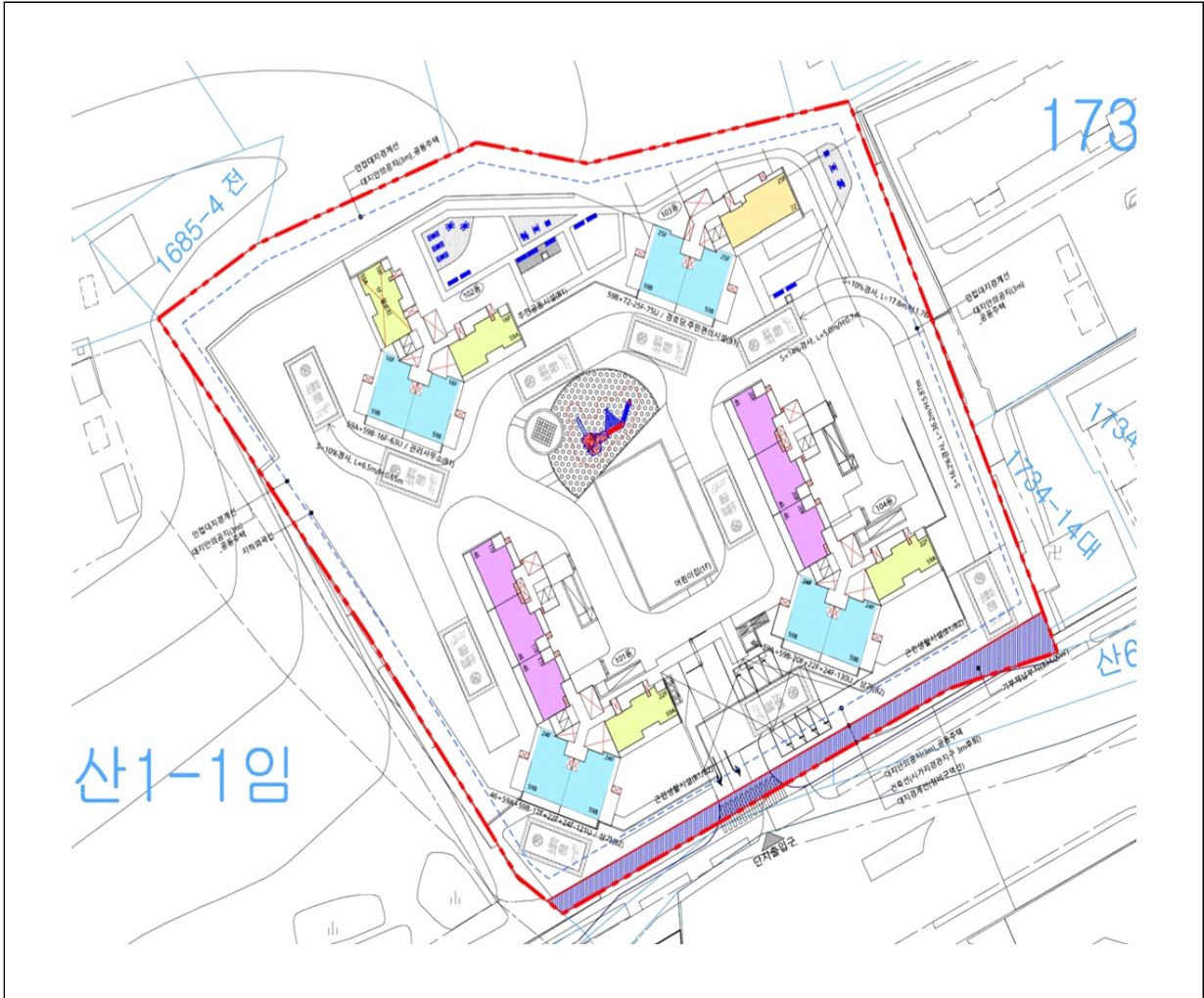
6.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한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달성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 지난 2022. 9. 27. 군의회 의견청취 이후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과 기타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안을 변경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북측, 서측 사면의 옹벽 높이 축소 및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옹벽의 안정성에 대한 구조기술사의 검토와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였으며, 옹벽계획 수정에 따라 전체 세대 수를 기존 390세대에서 389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대수는 기존 499대에서 506대로 세대 당 1.3대를 확보하여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보완사항을 적정하게 조치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따라 한우아파트 남측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신설,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 설치, 사업지 북측 송전탑 이전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제출되었으며, 노후 된 한우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정비계획도 1부.
2. 관계 법령 1부. 끝.

붙임

정비계획도



A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256.3%이하	25
20%이하	-

범례

	46A형	111세대
	59A형	75세대
	59B형	178세대
	72A형	25세대

	정비구역	
	획지선	
	건축한계선	
	지정용도	
	불허용도	
	용적률	최고높이
	건폐율	최저높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5월 10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3대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은 국·시비 재배정 사업으로서, 달성군 소유의 부지를 활용하여 대구시 소유의 건축물을 조성함에 따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공유재산 부지에 영구시설물(건축물) 축조 허용 요청
- 사업개요
 - 가. 사업명: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
 - 나. 위치: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55번지 외 4필지
 - 다. 사업기간: 2017년 ~ 2023년
 - 라. 사업비: 7,024백만원(국비 4,916백만원, 시비 2,108백만원)
 - 마. 사업규모: 대지: 24,216㎡
건축: 525.51㎡, 지상1층, 10개동(전통목구조)
 - 바. 소유 및 시설운영: 대구시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을 달성군 소유의 부지를 활용하여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군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본 사업은 국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관광사업인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수변역사자원의 가치재발견을 통해 달성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 및 수변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도동서원의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의 자연 환경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을 통해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는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사업이 국·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 및 운영 주체가 대구시인 점은 향후 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대구시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소유권 및 운영주체를 우리 군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관계 법령 1부. 끝.

참고**관계 법령(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10. 생략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